

의료원 시설안전위원회 운영규칙

제 정 2011. 7. 27

개 정 2019. 12. 4

개 정 2022. 5. 12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의료원 내의 시설물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, 사고예방 및 개선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시설안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설 안전(보안, 화재 등)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
2. 시설 안전(보안, 화재 등) 주요 사고 원인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시설 안전(보안, 화재 등)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
4. 시설 안전(보안, 화재 등)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시설 안전(보안, 화재 등)에 관련된 사항
6. 위원장 및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3 조(구 성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4 조(위촉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행정부원장이 되며, 병원장의 제청으로 의료원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의료원장이 위촉하며, 시설관리팀장, 소방환경파트장, 소방안전관리자, 보안담당자, 보건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 <개정 2019.12.4., 2022.5.12>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무담당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. <개정 2022.5.12>

제 5 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한다.

제 6 조(회의의 소집 및 심의)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7 조(회의록 및 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며, 중요한 사항은 의료원장에게 보고한다.

제 8 조(보 칙)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

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2. (폐 지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「의료원 시설안전위원회 운영세칙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